

○1단계('98년 하반기): 업무재설계 시행기
반조성, 표준모델설계·시범실시 및
추진기법 개발

-직원 교육훈련 등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

-업무재설계에 대한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

-시범실시 부서의 재설계 대상업무 선정, 업무재설계 및 실행, 개선효과 평가

○2단계('99년): 업무재설계 본격 시행

-업무재설계 시행분위기 확산

-전 부서에 대한 업무재설계 및 실행

-업무재설계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

○3단계(2000년 이후): 업무재설계 시행 정착 및 개선

-업무재설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 실시

-기간간의 업무재설계, 재배분으로 기능 위주의 조직을 시민수요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

西南團農水產物都賣市場建設企劃團業務報告

I. 一般現況

1. 기구설치(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근거)

'97. 4. 4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
확단 설치운영 결정(방침 제
290호)

'97. 8.22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
확단 기구 정원 승인(내무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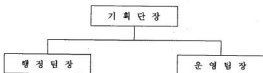
'97.12. 5 서울특별시 서남권농수산물도
매시장건설기확단설치조례 공
포(제3434호)

'98. 1. 5 서울특별시 서남권농수산물도
매시장건설기확단지체규칙 공
포(제2868호)

'97. 3. 9 정원조정 12명⇒11명(건축6급
1명감축)

'97. 8.20 정원조정 11명⇒10명(행정7급
1명감축)

2. 인력현황



구분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9
		행정	행정	행정	행정	행정	행정	타자
정 원	10	1	2	3	2	1		1
현 원	9	1	1	2	3		1	1
과부족	-1		-1	-1	+1	-1	+1	

3. 팀별 주요사무

행정팀 소관

○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및 총괄에 관
한 사항

○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관리계획에 관
한 사항

지장물 철거에 관한 사항

○상인유치 및 시장활성화에 관한 사항

○도매시장 개장준비 종합계획

○기타 기획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
하지 아니하는 사항

운영팀 소관

- 도매시장 관리·운영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
-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선정 및 유치에 관한 사항

-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
- 후적지 개발 및 이전대책에 관한 사항

II. 主要 推進 實績

1. 집단민원 등 대책추진

□지장을 철거

(단위: 건)

구 분	철거대상	철거현황	미철거	비고
계	64	63	1	
주 택	40	40		
영 업 장	17	17		
교 회	1	1		
세 일 여 행사	1			
감 시 자 동 차 정 비 공 장	1	1	1	차체 확보한 부지로 차고지 이전허가 요구
수 복	4	4		

□주요 집단민원처리

○'96.5.14: 부지내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 (시장방침 제448호)

-철거민아파트 특별공급지침 변경시행

- 가옥주: 기존 18평형→25.7평(분양 33평형) 제공(46세대)
- 세입자: 임대아파트제공 및 주거대책비 지급(70세대)

○'96.9: 부지내 광명 그리스도교회(의발산동 139-7소재) 대체부지 알선 공급

-가양택지개발지구 내 종교부지 450평 공급

□보상업무추진 - 총 476건 63,345백만원

○도 지: 228건 59,145백만원(148,576㎡)

○지 장 물: 70건 1,947백만원

○영 업 권: 40건 851백만원

○이주비등: 138건 1,402백만원

2. 주민이용 수희도로 보상 및 수용재결

도매시장건설 부지내 주민이용 도로가 도매시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, 강서구에서 주민이용 대체도로 개설요구가 있어 시장방침 제823호('96.9.2)호에 의거 개설결정

□사업규모

○위치: [기점: 강서구 의발산동 192-2

종점: 강서구 의발산동 301-3

○규모: B=10M, L=490M, 면적: 4,963㎡

□토지보상 및 재결신청액

(단위: ㎡, 천원)

구 분	총대상		협의보상		수용재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26	563,467	17	377,899	9	185,568
도 지	21	560,344	15	375,869	6	184,475
물 건	5	3,123	2	2,030	3	1,093

- 도매시장 관리·운영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
-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선정 및 유치에 관한 사항

-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
- 후적지 개발 및 이전대책에 관한 사항

II. 主要 推進 實績

1. 집단민원 등 대책추진

□지장을 철거

(단위: 건)

구 분	철거대상	철거현황	미철거	비고
계	64	63	1	
주 택	40	40		
영 업 장	17	17		
교 회	1	1		
세 일 여 행사	1			
감 시 자 동 차 정 비 공 장	1	1	1	차체 확보한 부지로 차고지 이전허가 요구
수 복	4	4		

□주요 집단민원처리

○'96.5.14: 부지내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 (시장방침 제448호)

-철거민아파트 특별공급지침 변경시행

- 가옥주: 기존 18평형→25.7평(분양 33평형) 제공(46세대)
- 세입자: 임대아파트제공 및 주거대책비 지급(70세대)

○'96.9: 부지내 광명 그리스도교회(의발산동 139-7소재) 대체부지 알선 공급

-가양택지개발지구 내 종교부지 450평 공급

□보상업무추진 - 총 476건 63,345백만원

○도 지: 228건 59,145백만원(148,576㎡)

○지 장 물: 70건 1,947백만원

○영 업 권: 40건 851백만원

○이주비등: 138건 1,402백만원

2. 주민이용 수희도로 보상 및 수용재결

도매시장건립 부지내 주민이용 도로가 도매시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, 강서구에서 주민이용 대체도로 개설요구가 있어 시장방침 제823호('96.9.2)호에 의거 개설결정

□사업규모

○위치: [기점: 강서구 의발산동 192-2

종점: 강서구 의발산동 301-3

○규모: B=10M, L=490M, 면적: 4,963㎡

□토지보상 및 재결신청액

(단위: ㎡, 천원)

구 분	총대상		협의보상		수용재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26	563,467	17	377,899	9	185,568
도 지	21	560,344	15	375,869	6	184,475
물 건	5	3,123	2	2,030	3	1,093

□우회도로 매입추진

- '97. 2.25: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
- '97. 9.25: 수용제결신청(서울시→중앙토지수용위원회)
- '98. 5. 6: 수용제결(중앙토지수용위원회)
- '98. 6.10: 미협외 보상건 법원공탁(3건, 76,635천원)

3. 행정소송사건 진행추진

○사건명: 토지수용 이의 재결처분 취소 청구(2건)

○원 고: 서기식(사건번호: 98두 14389)

김 용(사건번호: 97구 27574)

○피 고: 서울특별시,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○내 용: '97.5.16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건토지 수용제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재결한바, 이에 불복, 행정소송 제기

□진행상황

○원고: 서기식(대법원 특별1부)

- 해당토지: 강서구 외발산동 208, 208-1(보상면적: 1,557㎡, 재결처분액: 829,287천원)

- 진행경과

- 1차 변론: '97.11. 5 10:00(답변서 제출, 원고측 재감정신청)
 - 2차 변론: '98. 1.21 (원고측 재감정 결과 법원 미도착)
 - 3차 변론: '98. 3.18 (원고측 재감정 결과 법원 미도착)
 - 4차 변론: '98. 5.20 (원고측 재감정 평가서 법원도착)
- ※법원재감정평가액: 809,640천원(중도위재결액보다 19,647천원 낮게 평가)

• 선 고: '98.7.8. 원고 청구 기각(서울시 승소)

• 원고상고: '98.8.31 대법원상고

○원고: 김용(서울고등법원 특별4부)

- 해당토지: 강서구 외발산동 162-1, 165-2, 166-2 (보상면적: 3,255.5㎡, 이의

재결처분액 2,401,683천원)

- 진행경과

- 1차 변론: '97.9.26 10:00(답변서 제출)
 - 2차 변론: '97.10.24 10:00 (원고측 재감정 신청)
- ※법원재감정평가액: 2,352,682천원 (중도위재결액보다 49,001천원 낮게 평가)
- 3차~7차 변론등 소송진행중

III. 主要 推進事業

1.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

가. 사업개요

- 위 치: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 일원
- 규모: 부지 43,474평, 건물 29,345평
- 사업비: 1,988억원(국비 450억원, 시비 1,538억원)
- 사업기간: '94~2000년
- 취급부류: 청과부류(1일 2,914톤)
- 수혜인원: 320만명
- 이용권역: 양천, 강서, 구로, 금천, 영등포구와 동작, 관악구 일부

나. 추진현황

- '90.11. 3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방침 결정
- '96.12.30 토지보상 완료
- '97. 5.27 설계-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 선정(동부건설)
- '97.12.31 공사착공
- '98. 7.14까지 부지정지 및 터파기 공사
- '98. 7.15 건설공사 정지결정
- '98. 8. 6 설계변경과 관계있는 구역에 대한 공사 정지해제 방침 결정

다. 연차별 추진계획

- '98년: 사업비 34,261백만원
- 기초공사 및 우회도로 공사, 관리·운영방안 검토, 상권 실태분석
- '99년: 사업비 49,982백만원
- 건축 완공공사, 관리·운영방안 확정, 상인유치
- 2000년: 사업비 36,255백만원

- 시장 개설허가 등 개발관련 업무추진, 건물준공 및 개장
라. 사업추진 경위

○'80. 4.22: 농수산물도매시장 4대권역별 건설계획 확정

- 동남권: 가락동, 동북권: 구리시 서남권: 신정동, 서북권: 은평구외곽

○'90. 2.21: 농수산물도매시장 3대권역별 건설계획 확정

- 동남권: 가락동, 동북권: 구리시, 서남권: 신정동

※ 제86차 정책회의결과 서북권은 서남권에 흡수

○'94. 9.10: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결정

- 위치: 강서구 외발산동 213번지 일원

- 규모: 부지 37,760평 건물 20,000평

○'95. 3.20: 민원대회의의 개략(행정부시장 주재)

- 부지협소, 비정형으로 입지변경 검토: 50,000평이상 확보 필요 제기

○'95. 5.23: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·시공 일관입찰방식으로 결정

○'95. 6. 9: 제86차 정책회의의 결과

- 외발산동 96번지 일원으로 건립부지 변경결정

- 수협직판시장 포함, 강서면허시험장 일부포함

○'95. 6.24: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확정(방침 제654호)

- 외발산동 96번지 일원(50,000여평)

○'95.11.11: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 확정(방침제1052호)

- 당초 수협직판시장부지(9,179평) 포함에서 수협부지 제외

- 수협직판시장 건립고수 및 위치변경 요구 거부로 수협기득권 인정

○'96. 9. 5: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지침서 심의 확정

○'96.12.30: 건립부지 보상완료

○'97. 1.24: 기본설계 입찰(조달청)

○'97. 4. 2: 기본설계 심의(서울시지방건

설기술심의위원회)

○'97. 5.24: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(조달청): 동부건설(주)

- 실시설계기간: 150일('97.10.24한)

○'97.10.24: 실시설계 납품(동부건설→조달청)

○'97.11. 5: 설계·시공분야 업무이관(시장방침 제1007호)

- 도매시장건설기획단→건설안전관리본부

○'97.11.28: 실시설계도서심의완료(건설안전관리본부)

○'97.12.30: 건설공사계약체결(조달청↔동부건설)

- 총공사금액: 1,050억원, 1차공사계약금: 211억원

○'97.12.31: 공사착공

○'98. 7.14까지: 부지정지 및 터파기 공사

○'98. 7.15: 건설공사 정지

○'98. 8. 6: 설계변경과 관계없는 구역에 대한 공사해제방침 결정

2. 水協直販事業 推進

가. 사업개요

○ 위치: 강서구 외발산동 205-5 일대

○ 규모: 부지 9,179평, 건물 3,868평

○ 사업비: 500억원(국고 270억원, 자체 부담 230억원)

○ 사업기간: '92년~'98.10월

나. 추진경위

○'92. 5: 수산물직판시장 건립계획결정(수협중앙회)

○'93.10. 5: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(강서구청)

○'95.12.29: 공사착공

○'98.7월현재: 건물 골조공사 완료(10월 말 준공 및 개장예정)

다. 수협과 협의결과

○'95. 6.14: 도매시장 부지결정에 따른 협의(시→수협중앙회)

- 수협직판시장(소매기능)을 공판장(도매기능)으로 변경 건립토록 요청

○'95. 6.28: 정책회의 결과(건립부지결정)동보(시→수협중앙회)

- 외발산동 96번지일원 부지결정(수협

직관시장 포함)에 따른 재산관리방안 검토 통보요청

○'95. 7. 3: 도매시장부지결정에 따른 협의결과 회시(수협중앙회→시)

-서울시 요구안 수용불가 통보, 당초 계획대로 직관시장 건립 고수

○'95. 8. 3: 서울시 산업경제국장(김우석)과 수협중앙회 부회장(민경언) 면담

-수협부지흡수 반대(민경언 부회장)

○'95. 8. 4: 수협직관시장 공사중지 요청(시→수협중앙회)

-수협부지 흡수협의 결정시까지(세정 손실예방)

○'95. 8. 7: 수협직관시장 치리방안 관계관회의(서울시와 수협)

-도급계약 해지 불가능 및 정부 차입금 중도상환시 추가금리동 불가사유 제기

○'95. 8.19: 수협중앙회 의견제출(수협중앙회→시)

-공사계약 업체간에 도급계약 해지 불가능, 당초계획대로 계속추진 고수

○'95. 9.25: 수협직관시장 건립공사 계속 추진 협조요청(수협중앙회→시)

-공사중지시 시설공사비 국가보조 및 용자금 확보 불가

○'95.10.24: 수협직관시장 신축공사 진척사항 통보(수협중앙회→시)

-기성고 지급액: 20억원, 계약업체 손실액: 36억원

○'95.11. 8: 산업경제국장(김우석) 수협중앙회 회장면담

-건물위치 변경권유: 변경거부

-수협기득권 인정, 예정대로 추진주장

○'95.11.11: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 확정(방침 제664호)

-당초 수협직관시장 부지(9,179평) 포함에서 수협부지 제외

-수협직관시장 건립고수 및 위치변경 요구거부로 수협기득권 인정

3. 감사원 감사실시

○감사기간: '98.6.23~7.9(15일간)

○감사기관: 감사원 (3국2과장 권진성 외 7명)

○감사요구 및 지적사항(경제계가 인정되는 도매시장건설 전제)

(1)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수협직관시장 시설물 재배치 요구

-서남권 도매시장과 수협직관시장을 완전 구획 분리 공사로 시민이용에 불편 초래

• 수협직관시장

지하1층 주차장→농산물 소매시장

지상1층 공판장, 직관장→공판장(2/3), 직관장(1/3)

지상2층 회선타(소매)→기존대로 존치

지상3층 증축→서남권도매시장 서비스동 이전배치

• 서남권도매시장

관리사무실 및 서비스동→폐지요구

청과물동3층 증축→관리사무실 이전배치

-시설물 재배치 건축비등 예산 절감: 8,323백만원 공사비 감소

• 수협직관시장: 13,002백만원 증액, 서남권도매시장: 21,325백만원 감액

-재배치계획에 대한 회의(2회): 6.26(1차), 6.29(2차)

• 감사원 3국 2과장(권진성) 권유에 의거 수협중앙회 유통관리부장과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내 시설물 공동이용을 위한 시설 재배치(안) 검토, 감정 합의

※감사원의 의견통보시 우리 시 정책회의의 상정검토 후 공동사용토록 결정되면 수협중앙회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제시

(2) 남부순환도로상 지하차도(연장: 650m, 폭: 4차선, 소요예산: 200억원) 건설방침 미결정, 투자심사 및 예산반영 미조치

-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추진실

적 및 대체보고서('98.7.13) 지하차도 건설문제에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, 도로국에서 예산확보 설치토록 방침결정 등보

(3) 시장권내 유사도매시장(영등포시장 :

조방 및 영등시장) 정비계획 미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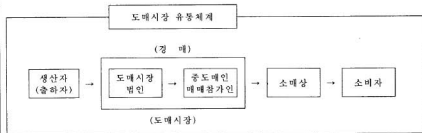
- 유사도매시장 경비를 위한 영등포 상권 실태조사 및 분석예정

- 영등포 지역 상권실태조사 분석자료를 근거로 정비계획을 수립, 유사도매시장 제도권으로 완전흡수 추진

4. 관리운영방안 검토추진

가. 관리운영 방안

(1) 管理·運營 二元化-都賣市場法人 親賓體制



□管理·運營

<관리>-관리사무소, 관리공사

- 개설자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(행정청)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관리공사가 관리업무 수행(농안법 제12조제2항)

- 시설물관리, 거래질서 유지,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등 도매시장 관리

※전국 18개 개장시장 중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은 관리공사가, 기타 시장은 관리사무소(행정청)가 관리

<운영>-도매시장법인

- 개설자가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관리운영 이원화체제(농안법 제12조 제3항, 제17조, 제28조, 제29조)

-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경매에 의하여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매매

□制度上 長·短點

<장점>

- 개설자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므로

시설유지관리, 제무자, 유통정보 등 시설관리 및 공익적 사업수행에 충실

- 단일시장 복수법인체제로 시장내 출하자 선택폭 확대

- 공공출자법인보다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단리성에 기여

<단점>

-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력 및 경비증가 등 관리상의 비효율성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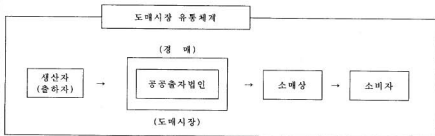
- 면간법인 경매사로 불공경쟁위 발생우려가 높음

- 복수법인 입주시 시설사용의 비효율성 발생

- 복수법인 체제로 운영시 동일종목에 대한 다양한 가격형성 현상 초래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(2) 管理·運營 一元化-公共出資法人 親善體制



□ 管理·運營

○주식회사 형태의 공공출자법인을 설립, 시장관리업무와 도매시장법인 업무를 병행 수행

- 소유주체: 지방자치단체(시소유), 관리운영: 공공출자법인에 임대

○공공출자 가능자(농안법 제17조의2)

- 지방자치단체, 관리공사, 농림축수협 등 조합

- 당해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 거래상인과 그 상인단체·도매법인

- 기타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 단, 지방자치단체, 관리공사, 농림축수협의 개별 또는 공공출자액은 총출자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해야 함

□ 制度上 長·短點

<장점>

○관리사무소(관리공사) 미설치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시 재정부담 해소

○주식회사 형태인 공공출자법인이 관리와 운영을 전담처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계고

○경매사 경영체 실현 및 단일법인체제로 시설사용의 효율화

○시가 직접 도매시장을 관리하지 않고 경영마인드를 가진 법인이 관리함으로써 시장관리운영의 고도화 기대

○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영관리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고, 도매시장 관련 당사자 등의 주인의식 고취 기대 <단점>

○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(대주주, 경영진 참여 등)할 시에는 농림축수협, 민간 등의 참여가 불확실

-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참여할 시에는 영리적 운영, 시설재투자 소홀 등 공익적 목적의 약화 우려

○다양한 투자주체의 참여로 의사조정에 어려움이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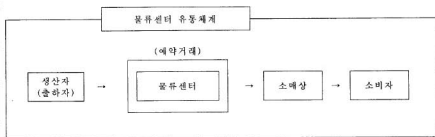
○인허가 시장내 질서유지 등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행정조치의 어려움이 예상

- 공공출자법인의 직접적인 행정조치 불가능: 지방자치단체가 조치

○공공출자법인은 단일 운영주체이므로 구역내 유사도매시장 등 기존 상권 흡수에 어려움이 예상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(3) 農水産物 物流센터 運營方案



□ 管理運營

- 지방자치단체, 농·임·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방식으로 운영
- 생산자조직, 산지유통시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(유통가공, 소포장)하여 직영점, 가맹점, 수퍼마켓, 대량수요처 등에 직접 배송
-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기존의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보관소포장 유통가공, 배송, 현장판매기능까지 포괄적 수행

□ 關聯法規 檢討

- 농안법 제57조의4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,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농시행규칙 제32조의2
 - 설치대상자: 지방자치단체, 농림축수협, 민간유통업자 등

□ 制度上 長 · 短點

<장점>

-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배제됨으로써 유통체계가 단순하고, 물류유통 비용 절감 가능
- 사전예약거래, 상대매매방식으로 출

하에 따른 위험감소 및 가격진폭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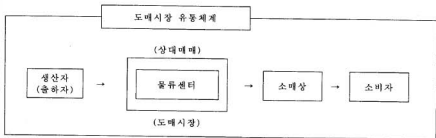
- 소매업체 등의 사전 수주·발주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물량확보에 기여
- 운영자 책임관리체제로 도매시장에 비해 자치단체의 유통관리 책임 경감
- 영등포지역상권 이전에 대한 부담 해소

<단점>

- 도매시장에 비해 대량물량의 신속한 처리 및 다양한 구색확보 곤란
- 산지산업화, 소매체계의 조직화 등이 미흡한 현 여건에서 도매물류의 경우 활성화에 다소 기간소요
- 건물구조 및 배치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비(추정액 21억원)등 추가 부담과 공사기간 연장문제 대두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(4) 都買商制(相對賣買)



□ 運營體系

- 도매상(도매업체)이 직접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대수, 수탁하여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출하자에게 대금정산
- 도매상과 출하자가 직접 가격을 교섭하여 출하
 - 가격결정방법: 상대매매 거래
- 생산자단체, 유통업체 등도 도매시장에 도매상으로 참여하여 영업 가능
- 도매상 영업동체
 - 거래내역에 대한 세무당국 통보 장치(세금계산서 발행 등)
 - 신용평가 및 공개제도 운영
 - 회계장부 작성 및 보고기준 통제
 - 시장정계위원회 운영 및 내부규칙 제정운영 등

□ 制度上 長·短點

<장점>

- 물류유통체계가 단순하여 거래시간이 단축되고 물류유통비용이 절감
- 수탁·판매 전 과정에 유통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보장으로 규모화 및 복합유통업체의 육성이 용이하고, 유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(유통시장 개방 등에 유리)
- 출하권 교집으로 출하에 따른 위험부담이 감소되고, 상대매매거래로 가격진폭 완화
- 생산자(단체)등의 도매시장영업(직거래, 직관등)이 가능하므로, 생산

자 육구 증속 및 상인견제 가능

- 신협시장의 경우 우수상인 유치 및 개장초기 시장활성화에 유리

<단점>

- 도매시장으로 이미 설계되어 확고한 것을 도매상체로 설계변경할 시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및 공기지연으로 인한 시공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정부공사 발주에 대한 신뢰성 저하
-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나, 포장화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현 여건에서는 오히려 물류비용의 가중이 우려
- 용집력이 약한 생산자 집단이 규모화된 도매상 집단에 귀속될 우려가 있고,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므로 시장대응력이 약한 생산자에 불리
- 검증되지 않은 거래체제로서 시행착오시 정책결정에 대한 부담가중
- 거래에 따른 제도적 장치(거래신고제, 신용평가제, 불공정거래 처벌법규 등)와 미흡시 시장대응력이 약한 출하자의 피해 예상
- 도·소매가 혼재함으로 인하여 유통거래절차 악화우려
- 상품의 규격화출하, 유통세널간 경쟁체제 미정착시 매점매석, 폭리 등이 우려
- 최소품목에 대한 물량공급 불가
- 농안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적정시

에도 현재 상장경매시장 체계로 건립중이므로 실제비용 추가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배분비용 책임문제 대부

○매점매석과 폭리등 지나친 영리위주 영업으로 수요자에게 부담전가 우려나, 관리운영방안 검토

(1) 유동전문가 등 자문회의 개최

○제1차 자문회의('98.7.22)

- 주 재: 행정1부시장
- 참석인원: 농협중앙회 서경근 상무 외 10명
- 결 과: 농산품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가 민간도매법인을 배제한 도매시장으로 건설추진

○제2차 자문회의('98.7.29)

- 주 재: 시장
- 참석인원: 서울대 김완배 교수 외 10명
- 결 과: 도매시장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공공출자법인과 도매상체가 대립되었으나 다수의견은 공공출자법인 형태 추진을 제시

○제3차 자문회의('98.8.5)

- 주 재: 행정1부시장
- 참석인원: APEC산업개발연구원 백준종 박사 외 7명
- 내 용: 수협리관시장과 시선품 공동사용문제 검토

○제4차 자문회의('98.8.11)

- 주 재: 행정1부시장
- 참석인원: 서울대 김완배 교수 외 6명
- 내 용: 도매상체 도입시 시설재설계 및 공기지연 등 대물비용 과다발생 등 문제점 제기

○제5차 자문회의('98.8.14)

- 주 재: 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
- 참석인원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길행 박사 외 7명
- 내 용: 도매상체와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장·단점 비교를

통한 서남권도매시장의 관리운영방안 토의

○제6차 자문회의('98.8.28)

- 주 재: 행정1부시장
- 참석인원: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 외 시 관계자 4명
- 내 용: 거래제도에 대한 논의보다도 변화하는 유통여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변성 있는 시장 건설 추진의 필요성 제기

(2) 농림부 및 새정치국민회의 의견수렴

<농림부 견해>

○'98.6.25 농림부 시도관계관 회의시 의견

- 공공출자법인 형태(관리·운영 일원화) 운영방안 강구 의견제시
- 기존 가락시장(관리운영 이원화) 관리운영체제의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출자법인형태 운영 필요성 제기
- 공공출자법인형태 추진지역에 대한 건설비지원 확대방안 강구
 - 건설비중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농안기금 증액지원(50%→80%)
 - 관리운영 이원화 추진지역 농안기금 하향지원(50%→30%이내)

○'98.8.11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

- 자문회의시 유통정책국장(김선오)의견
 - 도매상체나 공공출자법인 모두 장·단점이 있음
 - 농림부도 3월부터 수차 회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신설되는 중소도시 지방도매시장은 도매상체, 특별시·광역시외 중앙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원칙으로 건설추진
 - 서남권 도매시장은 기 공사를 착공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경지 결정을 한 것으로 배분비용도 고려, 개설자인 서울시가 조속히 결정할 사항임

○'98.8.13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 회의자료 중 제시내용

-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성 인정(전문가회의 의견 조정안)
 -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

경매제도뿐만 아니라 도매상제도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상장의 개념 재정립

- 특별시·광역시 등의 중앙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, 시장 여건과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품목을 대폭 확대, 다만, 특별시·광역시 개설자가 2개 이상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매매 가능
- 지방도매시장은 경매제나 도매상제중 개설자가 자율선택
- 도매상제를 도입한 공영도매시장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대금의 안정적 정산을 위한 장치들 동시에 강구

<새정치국민회의 견해>

- '98.8.18(화) 16:50 새정치국민회의 농수축산유통개혁단 박행시 위원장 의견
 - 유통인 중심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위주의 유통정책이 필요하고, 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.
 - 현행 농안법 체계는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조성으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있음
 - 생산자가 경매제와 수의매매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민인 생산자가 직판할 수 있는 시설의 존치도 필요
 - 서남권 도매시장은 경매제도와 도매상제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유

다. 자문회의 중 검토결과

- 유통전문가 자문회의 결과, 민간도매법인이 배제된 공공출자법인 형태와 상대매매인 도매상제의 의견 대립
- 경매제와 도매상제 모두 장·단점이 있고 현 농안법체계에서는 경매제를 인정하는 도매시장 건설만이 가능하나 경매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대두 및 도매상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추진
-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주무부서인 농림부의 공식적인 의견유보 등으로 미결정 상태임

라. 향후계획

- 서남권도매시장 관리·운영방안 조속 결정 추진
- 감사원 지적사항인 수협과 시설물 공동사용 문제에 대한 설계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추진
- 영동포 유사시장 정비를 위한 상권실태 조사 및 후적지 정비계획 수립